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항공안전평가에 대비하여 국제기준에 맞게 공항 안전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항운영증명에 대한 유효성 검사 제도를 신설하고, 대체안전수단을 인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항시설법이 개정('26.6.16)됨에 따라, 유효성 검사 시행 및 대체안전수단 인정에 필요한 세부 절차 등을 마련하는 한편,

공항시설과 운영체계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항운영증명 변경인가를 받도록 공항운영증명 변경인가의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공항운영증명 변경인가**”를 “**공항운영증명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공항운영증명 변경인가**”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서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항운영증명의 등급을 변경하는 경우**
 2. **활주로 신설 등 공항 시설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3. **비계기활주로를 계기활주로로 변경하는 등 공항 운영체계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제4항에 따른 신청의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공항운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항운영증명의 인가 및 변경인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공항운영증명에 대한 유효성 검사) ①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공항운영증명의 유효성 검사(이하 “유효성 검사”라 한다)를 받으려는 공항운영자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항의 운영체계가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규정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21호서식의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공항안전운영기준

2.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인가 및 변경인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공항운영규정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유효성 검사 결과를 공항운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유효성 검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31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법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대체안전수단의 인정에 관한 서류

제3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법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대체안전수단의 인정에 관한 서류

제3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항운영증명(변경인가를 포함한다) 및 유효성 검사를 실시한 연도에는 해당 검사로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갈음할 수 있다.

제45조 중 “별지 제36호서식”을 “「항공안전법」 제13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36호서식”으로 한다.

별표 1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2호의2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3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항운영증명의 취소 등 행정처분기준(제 34 조제 2 항)

1. 일반기준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2 호에 따른 공항운영정지 기간을 2 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공항운영정지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2 호에 따른 공항운영정지 기간을 2 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공중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 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공항운영정지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해당 법 조문	처분내용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경우	법 제41조제1항제1호	증명취소
2. 「항공안전법」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41조제1항제2호	
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지 아니한 경우		운영정지(15일)
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운용한 경우		운영정지(15일)
다.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받은 내용과 다		운영정지(7일)

르게 운용한 경우		
라.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목표·안전조직 및 안전장애 보고체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운영정지(7일)
3. 법 제3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유효성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공항을 운영한 경우	법 제41조제1항제2호의2	증명취소
4. 법 제38조의3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공항운영증명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공항운영증명서를 빌려준 경우	법 제41조제1항제2호의4	증명취소
5.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실시한 유효성 검사 후 보완조치를 명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제1항제2호의3 및 제3호	
가. 다음의 시정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 이동지역의 유지보수에 관한 시정조치사항 2) 시각지원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시정조치사항 3) 이동지역 작업 통제 또는 차량·장비 통제에 관한 시정조치사항 4) 장애물 통제기준에 관한 시정조치사항 5) 위험물의 취급과 저장에 관한 시정조치사항 6) 항공기 구조 및 소방에 관한 시정조치사항		운영정지(15일)
나. 그 밖의 시정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자		운영정지(7일)
6.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위반하여 공항 안전에 위협을 초래한 경우	법 제41조제1항제4호	운영정지(15일)
7.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공항종사자에 대한 관리·감독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법 제41조제1항제5호	

에 해당하는 항공기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 항공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200명 이상인 경우		증명취소 또는 운영정지(180일)
나. 항공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50명 이상 200명 미만인 경우		운영정지(150일)
다. 항공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00명 이상 150명 미만인 경우		운영정지(120일)
라. 항공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경우		운영정지(90일)
마. 항공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0명 이상 50명 미만인 경우		운영정지(60일)
바. 항공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운영정지(30일)
사. 항공기사고로 인한 항공기 또는 공항시설 · 제3자 등의 재산 피해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		운영정지(30일)
아. 항공기사고로 인한 항공기 또는 공항시설 · 제3자 등의 재산 피해가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운영정지(20일)
자. 항공기사고로 인한 항공기 또는 공항시설 · 제3자 등의 재산 피해가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운영정지(15일)
차. 항공기사고로 인한 항공기 또는 공항시설 · 제3자 등의 재산 피해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운영정지(10일)
카. 항공기사고로 인한 항공기 또는 공항시설 · 제3자 등의 재산 피해가 1억원 미만인 경우		운영정지(5일)

비고

1. 위 표의 제4호에 따라 공항운영정지 처분을 할 때 인명피해와 항공기 또는 공항시설 · 제3자 등의 재산 피해가 같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공항운영정지 기간을 합산하여 처분하되, 합산하는 경우에도 공항운영정지기간은 180일을 초과할 수 없다.

2. 위 표의 제4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중상자 2명을 사망자 1명으로 보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3. 위 표의 제4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사망자와 중상자의 구분은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3의 기준에 따르되, 사망자는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전부를 포함한다.

공항운영증명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20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공항시설 관리자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신청하는 공항운영 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공항의 개 요	명칭	
	위치	
	표고	
	표점	
	주요 운항형태 (복수선택 가능)	☐ 국제정기편운항 ☐ 국제부정기편운항 ☐ 국내정기편운항 ☐ 국내부정기편운항 ☐ 소형항공기운항
	사용예정인 최대 항공기 기종(등급)	

「공항시설법」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공항운영증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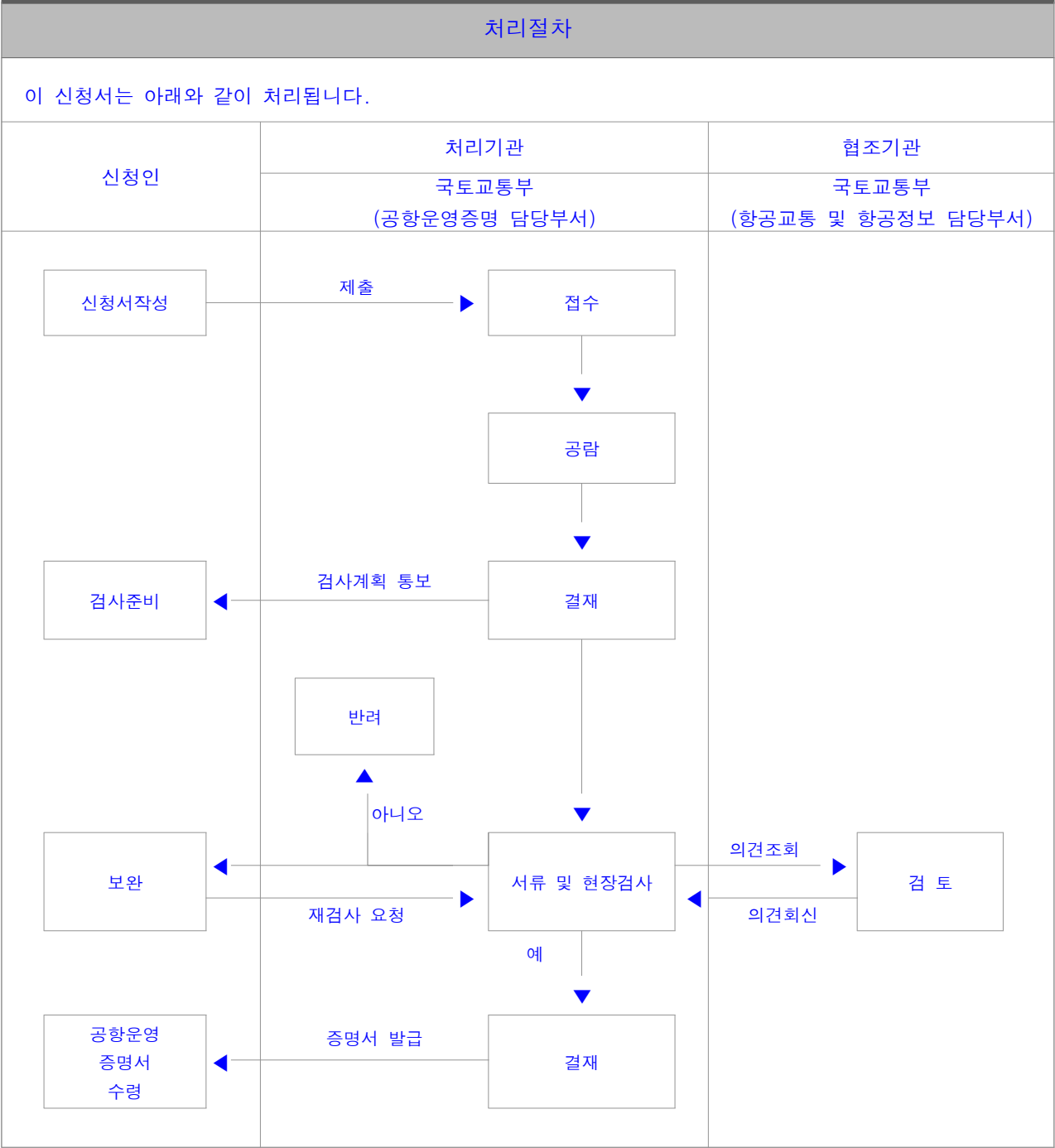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The Republic of Korea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증명번호 제 호 Certificate No. 공항운영등급 : Class of AOC
공항운영증명서 Airport Operating Certificate		
1. 공항명: Name of Airport	2. 공항좌표: Latitude/Longitude	3. 공항운영자: Airport Operator
4. 이 증명서는 「공항시설법」 제38조에 따라 발급하며, 상기 공항운영자가 「공항시설법」 및 이와 관련된 모든 규정과 국토교통부장관에 의해 인가된 공항운영규정상의 모든 조건을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공항운영을 허가함 This Airport Operating Certificate is issued pursuant to Article 38 of the Aviation Ac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authorizes the operator herein mentioned to operate the named Airport insofar as the airport operator complies with the foregoing and the regulations made thereunder, and conditions which are set out in the Airport Operations Manual approved by the Minister of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5. 이 공항운영증명서는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으며, 공항운영증명에 대한 유효성 검사 또는 공항운영검사 결과에 따라 취소 또는 운영 정지되지 아니하는 한 유효함 This certificate is not transferable or rentable and is shall remain in effect unless it is canceled or its operation is suspended based on the validity check of the airport operating certificate or the results of the airport operating inspection.		
6. 발급일자: 년 월 일 Date of Issuance Year Month Day 국토교통부장관 직인 Minister of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Official Seal)		

(뒤 쪽)

공항운영증명의 부속서	
이 부속서는 공항운영증명서의 일부로서 다음의 사항을 증명함	
공항 구분	☐ 국제공항 ☐ 국내공항 (※ 국제공항은 국제 정기편 운항 공항, 국내공항은 그 외 공항)
분류기준	분류번호 ☐ 1 ☐ 2 ☐ 3 ☐ 4 분류문자 ☐ A ☐ B ☐ C ☐ D ☐ E ☐ F
활주로 수	__ 분
활주로 유형 (※ 모든 활주로를 포함)	 RWY __ / __ ☐ 계기 [☐ 정밀 (☐ CAT I ☐ CAT II ☐ CAT III) ☐ 비정밀] ☐ 비계기 RWY __ / __ ☐ 계기 [☐ 정밀 (☐ CAT I ☐ CAT II ☐ CAT III) ☐ 비정밀] ☐ 비계기
구조·소방등급	☐ 10등급 ☐ 9등급 ☐ 8등급 ☐ 7등급 ☐ 6등급 ☐ 5등급 ☐ 4등급 ☐ 3등급 ☐ 2등급 ☐ 1등급

※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가한 공항운영규정에서 정함

공항운영증명의 부속서(별지)

면제/예외사항

관련 기준	면제사항(기간)	승인근거	조치사항	비고

대체안전수단 인정사항

관련 기준	기준미달사항	대체안전수단(기간)	위험도 평가 결과 및 경감 조치 계획	비고

(뒤 쪽)

공항운영증명 기록부

※ 「공항시설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공항운영증명 변경인가 및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유효성 검사 결과를 포함한다.

공항운영증명 변경인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90일	
신 청 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공항의 명칭			공항운영 증명번호	제 호	
공항운영 등급	변경 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변경 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변경 내용					
변경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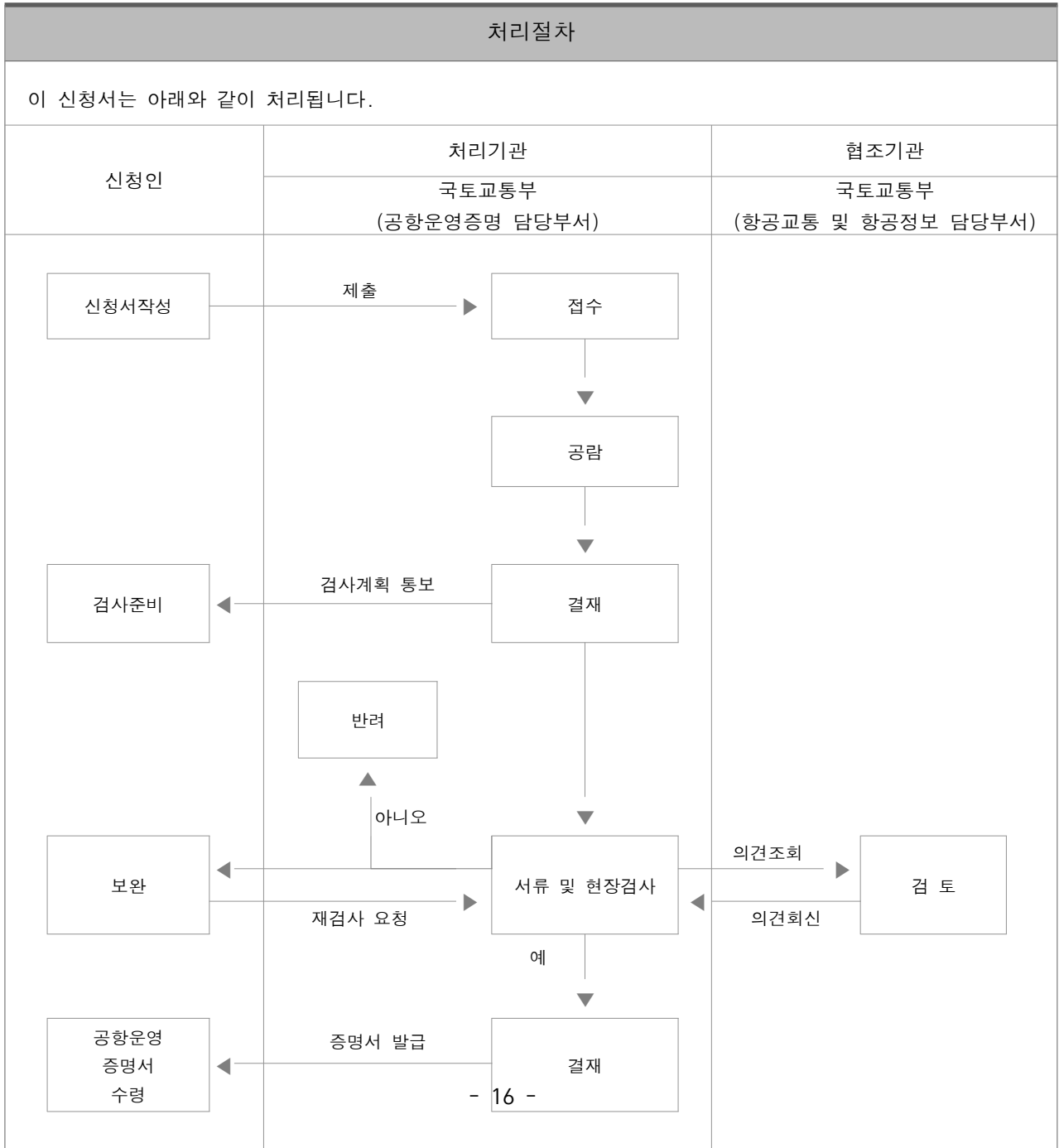
「공항시설법」 제3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4항에 따라 공항운영증명 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공항운영증명의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공항운영증명 유효성 검사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20일
신 청 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공항의 명칭		공항운영 증명번호	제 호

「공항시설법」 제3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공항운영증명에 대한 유효성 검사를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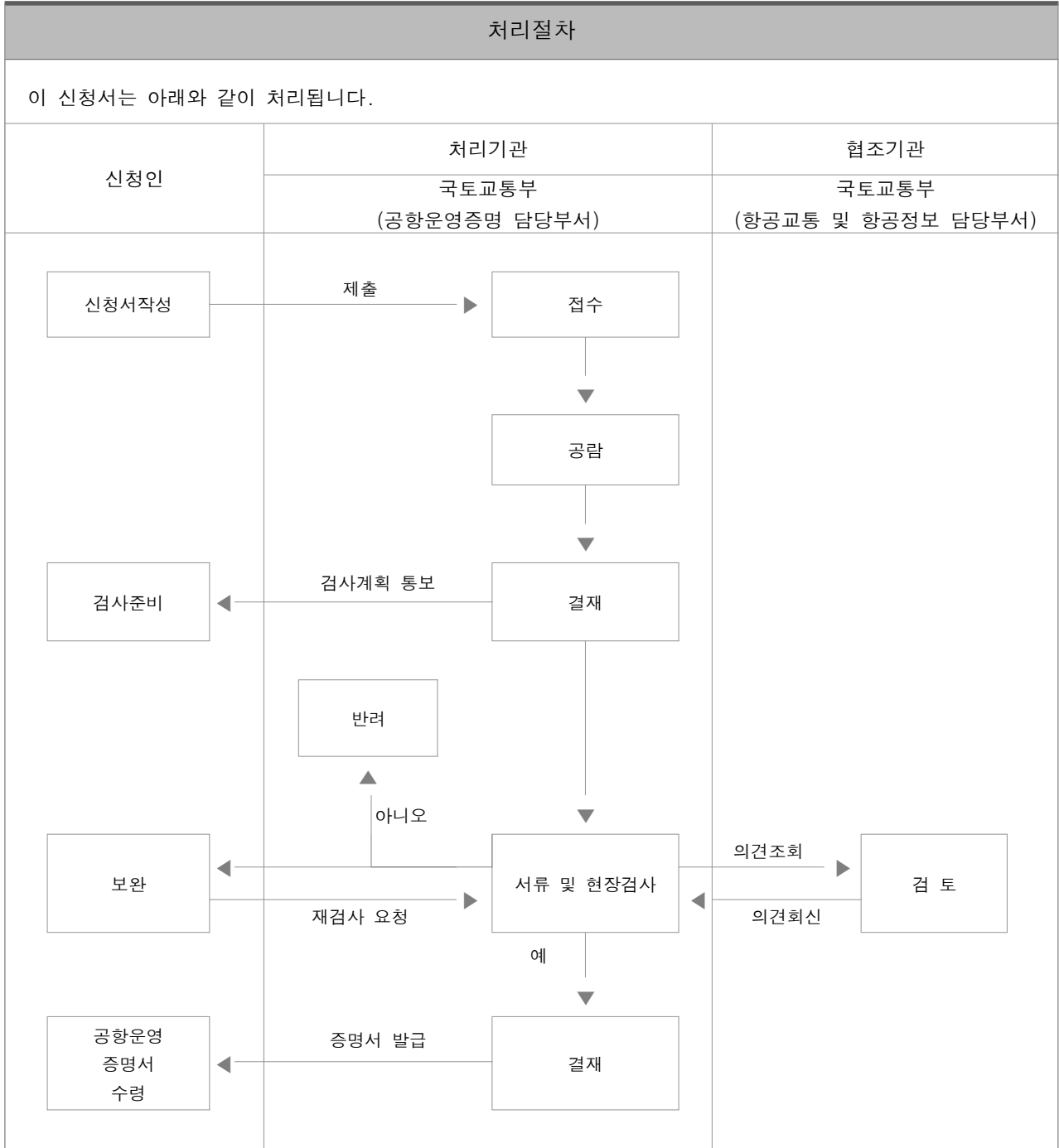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공항운영규정 인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20일
신 청 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공항의 명칭		
운영하려는 공항운영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신청 사유		
주요 내용		

「공항시설법」 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공항운영규정의 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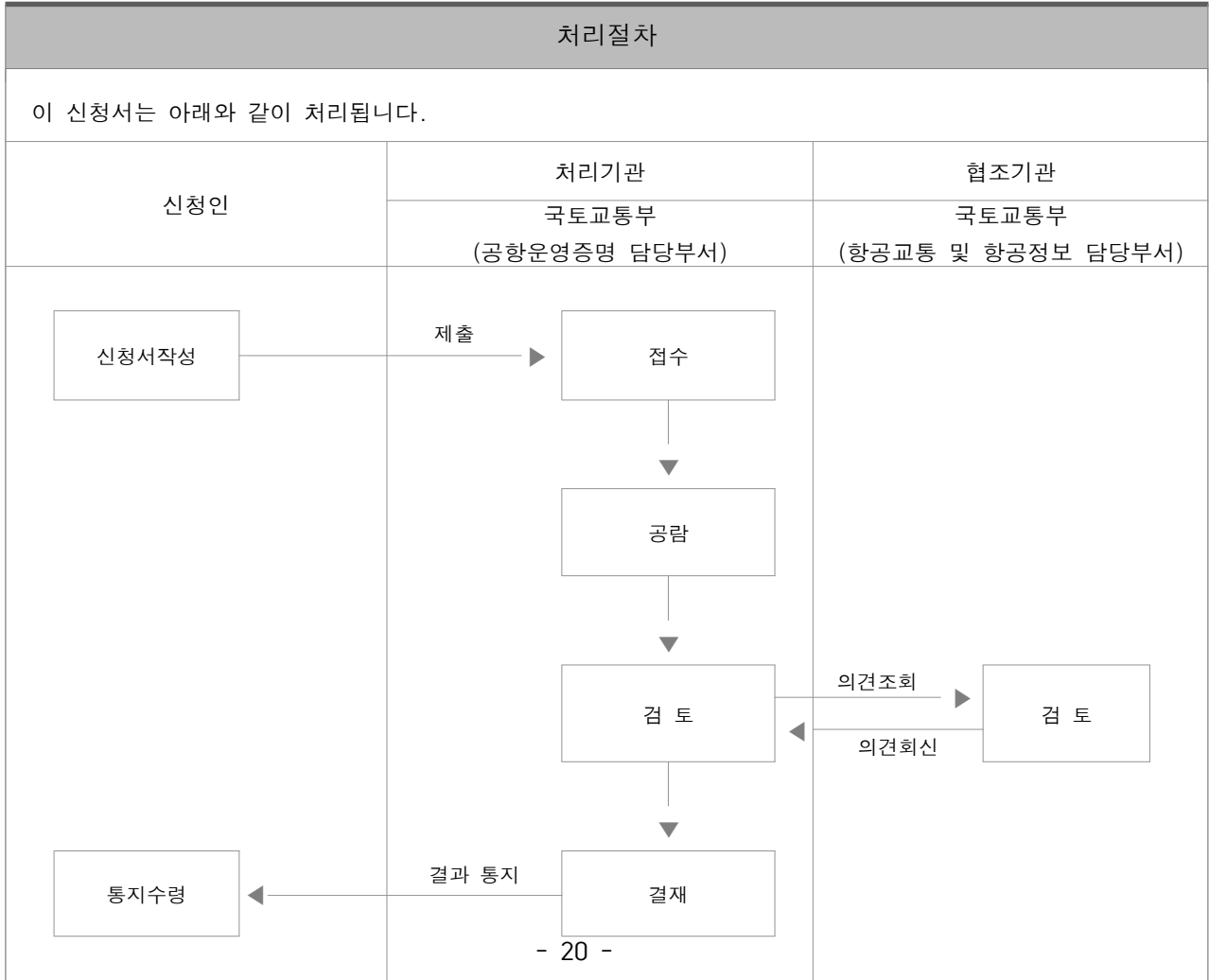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공항운영규정(「공항시설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세부운영규정을 포함합니다) 2부 2. 공항안전운영기준에서 정하는 공항안전운영기준 이행서(Compliance Statement) 3. 항공기의 운항 또는 항공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공항시설의 소유 또는 그 권리에 관한 서류 4. 활주로·유도로·계류장 등 항공기의 이륙 및 착륙을 위한 시설의 관리·운영현황(위탁운영 현황을 포함합니다)에 관한 서류 5. 공항안전운영기준에서 정하는 필수 공항정보 양식 6. 법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대체안전수단의 인정에 관한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공항운영규정 변경인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20일
신 청 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공항의 명칭		
공항운영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변경 내용		
변경 사유		

「공항시설법」 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공항운영규정의 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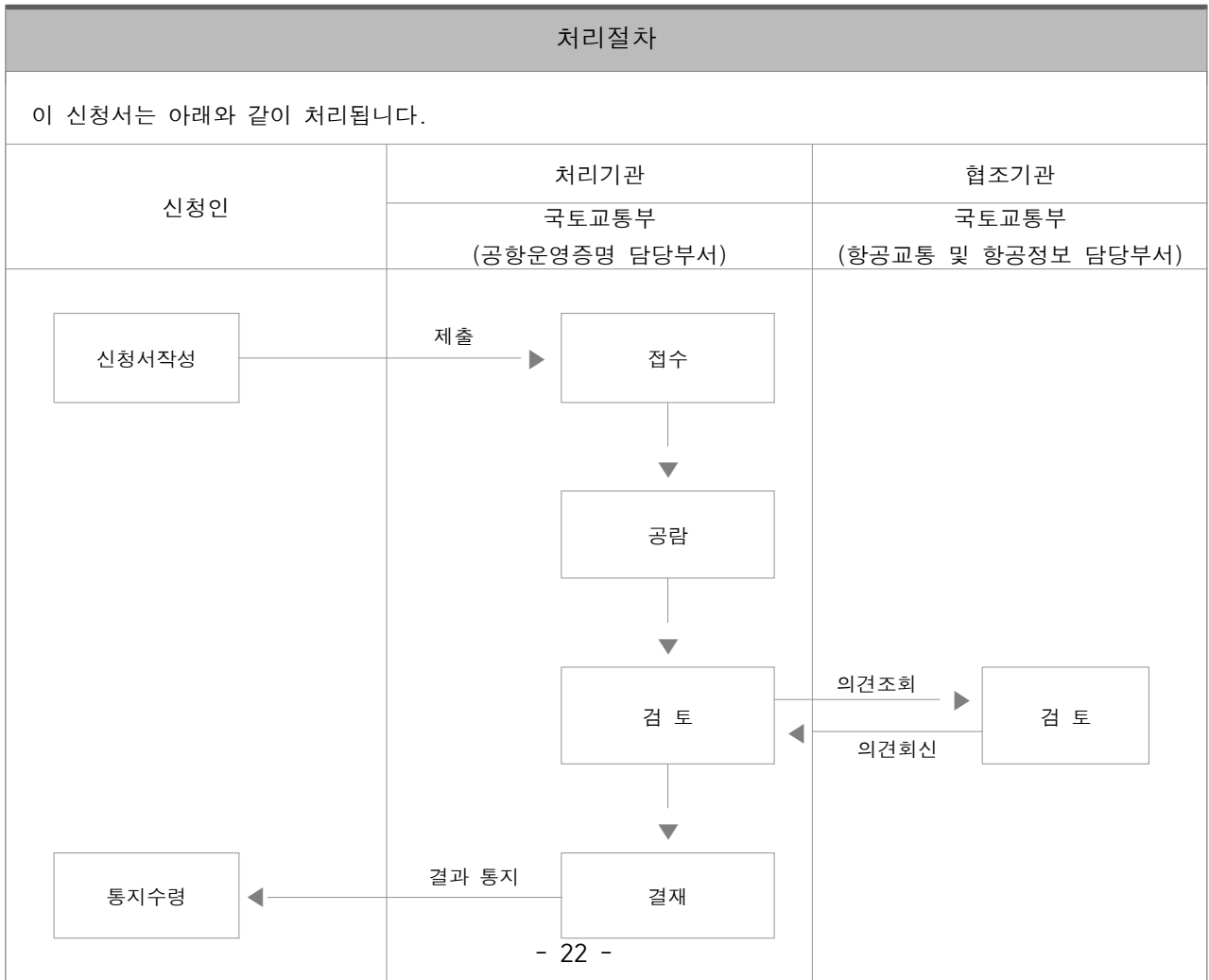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변경 내용 및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신·구 내용 대비표 3. 법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대체안전수단의 인정에 관한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 국토교통부(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사 진 3cm × 4cm	항공안전감독관증 (CIVIL AVIATION SAFETY INSPECTOR CERTIFICATE) 증명서 번호(Certi. No.): 구분(Occupation): 성명(Name): 성별(Sex): 생년월일(Date of Birth): 년(y) 월(m) 일(d) 소속(Employed by): 유효기간(Date of Expire): 년(y) 월(m) 일(d) 서명(Signature of Holder):
---	---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	
이 사람은 「공항시설법」 제55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항행안전시설설치자 등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사무실이나 그 밖의 장소에 제한 없이 출입하여 사업시행자, 항행안전시설설치자 등이 같은 법 제31조, 제38조, 제40조 및 제47조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를 검사하거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항공안전감독관임을 증명함. This is to certify that this person is delegated to exercise the authority under Article 55 of the Airport Facilities Act to order project implementers, installers of air navigation safety facilities, or other related officials to make reports or submit materials deemed necessary. This person is also duly authorized to access offices or any other places without restriction to inspect the work performed by project implementers, installers of air navigation safety facilities, or other related officials pursuant to Articles 31, 38, 40, and 47 of the same Act and to order corrective measures if necessary.	
발행번호(Issued No.): 발행일자(Issued date): 발행장소(Issued at):	국토교통부장관 직인 (Minister of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0조(공항운영증명의 인가 등) ① ~ ③ (생략) ④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u>공항운영증명 변경인가</u> 를 받으려는 공항운영자는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공항운영규정 변경인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항운영규정 변경신고를 한 후 별지 제22호서식의 신청서에 그 공항의 공항운영증명의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u>다음 각 호의 서류</u> 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0조(공항운영증명의 인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u>공항운영증명 변경인가</u> 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u>공항운영증명 변경인가</u> ----- ----- ----- ----- ----- <u>서류</u> ----- ----- ----- ----- ----- ----- ----- ----- ----- ----- ----- -----.
1. <u>국제항공노선 운항여부(국제항공노선 운항의 경우에만 해당하고, 부정기편만 운항하는 공항은 제외한다)를 기재한 서류</u>	1. <u>공항운영증명의 등급을 변경하는 경우</u>

2. 신청일 전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평균 연간 운항 횟수를 기재한 서류

3. 해당 공항에 취항하는 항공기의 규모를 기재한 서류

<신 설>

⑤·⑥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2. 활주로 신설 등 공항 시설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3. 비계기활주로를 계기활주로로 변경하는 등 공항 운영체계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항운영증명 대상의 중대한 변경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⑥ (현행과 같음)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제4항에 따른 신청의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공항운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항운영증명의 인가 및 변경인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30조의2(공항운영증명에 대한 유효성 검사) ① 법 제38조의2 제1항에 따라 공항운영증명의

유효성 검사(이하 “유효성 검사”라 한다)를 받으려는 공항운영자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항의 운영체계가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규정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21호서식의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공항안전운영기준

2.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인가 및 변경인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공항운영규정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유효성 검사 결과를 공

제31조(공항운영규정의 수립 인가)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공항운영규정의 인가를 받으려는 공항운영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 5. (생략)

6. 공항안전운영기준에 미달하
는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보
완할 수 있는 대체시설 또는
대체운영절차를 적은 서류

② ~ ⑤ (생략)

제32조(공항운영규정의 변경)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

②・③ (생 략) 제45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 55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u>별지 제36호서식</u>과 같다.	<u>다.</u> ②・③ (현행과 같음) 제45조(검사공무원의 증표) ---- ----- 「<u>항공 안전법</u>」 제132조제6항 및 「<u>같은 법 시행규칙</u>」 제315조제2항 <u>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36호서식</u> -----.
--	--